國民福祉年金法(案)

議案番號	

提案年月日 : 1973. 11

提 案 者 : 政 府

提案理由

國民의 老齡·廢疾 또는 死亡 등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國民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寄與하기 위하여 이 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國內에 居住하는 18歲이상 60歲未滿의 國民을 加入對象으로 하

854-135

고 一定한 事業所에 使用되는 勤勞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所의 使用者를 第1種加入者로, 第1種加入者 以外의 者를 第2種加入者로 함(案 第6條 및 第7條).

나. 第1種加入者는 報酬月額이 萬5阡원을 超過하는 者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當然 適用토록 하고 第2種加入者는 任意適用을 原則으로 함(案 第7條 내지 第9條).

다. 年金給與의 種類는 老齡年金, 障害年金 및 遺族年金으로 하고, 脫

退者에 대하여는 返還一時金을 支給하도록 함.

(1) 老齡年金은 全額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및 老齡年金의 特例로 하되 (第 第37條, 第38條 및 附則 第3條)

(가) 全額老齡年金은 20年이상 加入한 者가 60歲에 達하였을 때에 支給하도록 함.

(나) 減額老齡年金은 10年이상 20年未滿 加入한 者가 60歲에 達하였을 때에 支給하도록 함.

(다) 在職者老齡年金은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이상인 60歲이상의 者等으로서 加入者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동안 支給하도록 함.

(라) 老齡年金의 特例는 本法施行當時 40歲이상 55歲未滿의 者가 5年이상 加入한 경우 그 年齡에 따라 支給하도록 함.

(2) 障害年金은 加入期間 1年이상의 者가 障害를 입었을 경우에 障害等級에 따라 年金을 支給하

는 것으로 함(案 第42條·第43條).

(3) 遺族年金은 加入期間 1年이상의 加入者 등이 死亡한 경우 그 遺族에게 支給하도록 함(案 第47條 내지 第49條).

(4) 返還一時金은 加入期間 10年未滿의 者가 60歲에 達하였을 경우 또는 遺族年金의 支給要件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加入者等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되, 女子의 경우에는 加入期間과 年齡에 關係없이 退職後 1年이

00 66

835
131

經過한 後 本人의 希望에 따라 自己負担의 元利金을 返還 支給하도록 함(案 第56條).

라. 年金給與에 所要되는 財源은 醵出料에 의하여 充當하도록 함.

(1) 第1種加入者의 醵出率은 標準報酬月額의 1000分의 70으로 하되, 使用者는 1000分의 40, 勤務者는 1000分의 30으로 함(案 第66條·第67條).

(2) 第2種加入者의 醵出料는 月 900원 이상의 定額으로 함

(案 第66條).

마. 年金額은 基本年金額과 加給年金額의 合計로 하고, 基本年金額은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하여 所得再分配의 效果를 擧揚하도록 함(案 第26條·第27條·第38條·第43條 및 第49條).

바. 年金給與額에 대하여는 公課諸稅를 全額免除하도록 함(案 第36條).

사. 年金給與와 醵出料 등에 대한 異議申請制度를 두었음(案 第75條 내지 第99條).

아. 國民福祉年金事業은 保健社會部長官이 管掌하고 醵出料의 徵收業務는 國稅廳長에게 全部 또는 그 一部와 이에 関聯된 業務를 委託하도록 함(案 第2條·第110條).

法律第　　號

國民福祉年金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의 老齡·廢疾 또는 死亡 등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國民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管掌) 이 法에 의한 國民福祉年金事業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3條(用語의 定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不問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主를 말한다.

3. "報酬"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價로 勤勞者에게 賃金·俸給·手當 其他 如何한 名稱으로든지 支給하는 一切의 金品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每年의 第1種加入者 全員의 標準報酬月額의 平均値를 말한다.

5. "醵出料"라 함은 第1種加入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負担金과 寄與金의 合算額을, 第2種加入者에 있어서는 그 者가 負担하는 額을 말한다.

6. "負担金"이라 함은 醵出料中 第1種加入者를 使用하는 使用者가 負担하는 額을 말한다.

7. "寄與金"이라 함은 醵出料中 第1種加入者가 負担하는 額을 말한다.

②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配偶者 夫 또는 妻에는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第4條(年金額의 調整) 이 法에 의한 年金額은 國民의 生活水準·賃金·物價 其他 經濟事情에 顯著한 變動이 생긴 때에는 變動後의 諸事情에 알맞도록 하기 위하여 遲滯없이 改定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5條(國民福祉年金審議委員會) ①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國民福祉年金事業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

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國民福祉年金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委員會는 勤勞者·使用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 構成하되 各各 同數로 한다.

③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年金加入者

第1節 資格

第6條(加入對象) 國內에 居住하는

623-00 62

18歲이상 60歲未滿의 國民은 國民福祉年金의 加入對象이 된다. 다만,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年金에 加入한 者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除外한다.

第7條(加入者의 種類) ① 國民福祉年金加入者는 第1種加入者와 第2種加入者로 區分한다.

② 第1種加入者는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에 使用되고 있는 勤勞者中 報酬月額이 萬5阡원을 超過하는 者와 第8條 및 第9

條의 事業所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所의 使用者가 되며, 第2種加入者는 第1種加入者外의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加入한 者가 된다.

③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에 使用되고 있는 勤勞者中 報酬月額이 萬5阡원 이하인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1種加入者로 될 수 있다.

第8條(當然適用事業所) 事業의 種類, 勤勞者의 數 등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所(事務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는 當然히 이 法의 適用事業所(이하 "當然適用事業所"라 한다)로 된다.

第9條(任意適用事業所)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當然適用事業所가 아닌 事業所의 使用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當該事業所를 이 法의 適用事業所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使用者는 當該 事業所에 使用되고 있는 勤勞者中 報酬月額이

萬 5 阡 원을 超過하는 者의 3 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認可를 받아 이 法의 適用事業所로 된 事業所(이하 "任意適用事業所"라 한다)의 使用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當該 事業所를 이 法의 適用事業所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0 條(擬制適用)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當然適用事業所가 同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未達하게된 경우에도 그 事業所에 대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任意適用事業所로 보고 이 法을 繼續 適用한다.

第11條(加入者資格의 取得時期) ① 第1種加入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날에 第1種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1. 第7條 第2項에 該當하는 者의 境遇

가. 當然適用事業所 또는 任意適用事業所에 報酬月額이 萬5阡원을 超過하는 勤勞條件으로 使用된

날

나. 報酬月額이 萬5阡원을 超過하는 勤務條件으로 使用되고 있는 事業所가 當然適用事業所 또는 任意適用事業所로 된 날

다. 當然適用事業所 또는 任意適用事業所에 使用되고 있는 者로서 報酬月額이 萬5阡원을 超過하게 된 날

2. 第7條 第3項에 該當하는 者의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

② 第2種加入對象者는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에 第2種 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第12條(加入者資格의 喪失時期) ① 第1種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날의 翌日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國籍을 喪失한 때
3. 適用事業所와 使用關係가 終了된 때
4. 報酬月額이 萬5阡원 이하로 된 때(第7條 第2項에 該當하는 勤勞者에 限한다)
5. 第1種加入者의 資格喪失의 認可를 받은 때(第7條 第3項에 該當하는 者에 限한다)
6. 第9條 第3項의 認可가 있은 때

② 第2種加入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게 된 날의 翌日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國籍을 喪失한 때
3. 國內에 住所가 없어진 때
4. 第2種加入者의 資格喪失의 認可를 받은 때
5. 60歲에 達한 때

第13條 (任意繼續加入者) ① 第1種加入者가 老齡年金을 받을 수 있는 法定 加入期間의 滿了前에 그 資格을 喪失하게 된 경우에는 保健社

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種加入者의 資格을 繼續維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入者는 언제든지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第1種加入者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條(任意繼續加入者의 資格喪失時期)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加入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게 된 날의 翌日에 第1種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國籍을 喪失하거나 國內에 住

所가 없어진 때

3.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入期間이 滿了된 때

4. 第13條第2項의 申告가 受理된 때.

5. 醵出料를 滯納하고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期限까지 그 醵出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第15條(資格의 確認) ① 加入者의 資格의 取得 및 喪失은 保健社會部長官의 確認으로써 그 效力을 發生한다

② 第1項의 確認은 第21條의 規定에

00 1157
839

의 한 申告, 加入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行한다.

③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의 取得·喪失 및 加入者 種別의 変更에 관한 確認을 保健社会部長官에게 請求할 수 있다

第16條 (加入者의 証票)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加入者에 대하여 國民福祉年金加入者임을 証明하는 証票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証票의 書式과 交付方

法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2節 年金加入期間

第17條(年金加入期間의 計算) ① 年金加入期間은 月에 의하여 計算하되 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 날이 屬하는 月로부터 그 資格을 喪失한 날이 屬하는 月의 前月까지로 한다

② 加入者가 그 資格을 取得한 날이 屬하는 月에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그 月을 1月로 計算

한다.

③ 年金加入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醵出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期間은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18條 (期間의 合算)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다시 그 資格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는 前後의 加入期間을 合算한다.

第19條 (期間의 通算) 加入者의 資格에 있어서 그 加入種別에 變動이 있을 경우에는 그 者의 加入期間은 前後 種別 加入期間을 通算한 期間으로 한다.

第3節 標準報酬

第20條(標準報酬와 標準所得) ① 第1種加入者의 醵出料 및 給與의 計算은 加入者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하여 정한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을 基礎로 하여 算定한다.

② 第2種 加入者의 醵出料 및 給與의 計算은 第2種加入者의 標準所得月額을 基礎로 하여 算定한다.

③ 第1項의 等級別 標準報酬月額, 第2項의 標準所得月額과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節 申告等

第21條(申告) ① 第1種 加入者를 使用하는 事業所의 使用者는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加入者의 資格의 取得 및 喪失, 加入者의 種別의 変更, 加入者別 報酬月額등에 관한 事項을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2種 加入者는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 資格의 取得과 喪失 및 姓名·住所의 変更에 관한 事項등을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種 加入者가 不可避한 事由로 그 申告를 履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屬한 世帶의 世帶主가 그 申告를 代行할 수 있다.

第22條(使用者등에 대한 通知와 公告) ①保健社会部長官은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을 한 때, 또는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報酬月額을 決定하거나 改定한 때에는 當該 使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使用者가 第1項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第1種 加入者 또는 第1種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1種 加入者가 그 資格을 喪失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者의 所在가 不明하여 第2項의 通知를 할 수 없을 때에는 使用者는 그 뜻을 保健社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 保健社会部長官은 第3項의 報告가 있을 때에는 所在가 不明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에게 通知한 事項을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

告하여야 한다.

⑤ 保健社会部長官은 事業所가 廃止된 경우 其他 不得已한 事情에 의하여 第1項의 通知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第2項의 通知에 代身하여 그 通知하여야 할 事項을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第23條(申告人에 대한 通知)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接受하고 그 申告가 事実과 相違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뜻을 그 申告人에게 通知하여

야 한다

② 第22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通知에 이를 準用한다

第3章 給與

第1節 通則

第24條 (給與의 種類) 이 法에 의한 給與의 種類는 다음 各号와 같다

1 老齡年金

2 障害年金

3 遺族年金

4 返還一時金

第25條(給與의 決定)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權利를 가지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이 決定한다.

第26條(基本年金額) ① 第1種 加入者의 基本年金額은 다음 各号에 揭記한 額의 合算額으로 한다.

1. 年金受給前年度의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240에 該當하는 額

2. 年金加入期間中 最終3年間의 標準報酬月額을 平均한 額(이하 "平均標準報酬月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1에 該當하는 額에 240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240에 그 超過月数를 加算한다)을 乘한 額. 다만,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平均 標準報酬月額에 그 超過 每 1年에 대하여 平均標準報酬月額의 100分의 4에 該當하는 額을 合算한 額을 그 者의 平均標準報酬月額으로 보아 計算한다.

② 第2種 加入者의 基本年金額은 다음, 各号에 揭記한 額의 合算額으로 한다.

1. 年金受給前年度의 平均報酬月額

의 100分의 180에 該當하는 額.

2. 年金加入期間中 最終3年間의 標準所得月額을 平均한 額의 100分의 1에 該當하는 額에 240(年金加入期間이 20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240에 그 超過月數를 加算한다.)을 乘한 額. 다만,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을 超過한 경우에 있어서는 第1項第2号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加入期間이 通算된 者에 대한 基

本年金額은 加入者의 種別加入期間에 따라 算定된 額을 合算한 額으로 하되, 그 計算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第2号 및 第2項第2号의 最終3年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 및 平均標準所得月額은 年金受給前年度의 平均報酬月額이 加入最終年度의 平均報酬月額보다 100分의 20 이상의 變動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率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第27條 (加給年金額) ① 加給年金額은

受給權者가 그 權利를 取得한 當時 그 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있었던 配偶者, 18歲未滿의 子女 또는 障害等級 1級 및 2級에 該當하는 障害狀態에 있는 子女에 대하여 計算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한 加給対象者에 대한 加給年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端數處理) 이 法에 의한 給與의 支給 및 醵出料의 徵收에 있어서 그 金額에 10원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國庫金端數計算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10원未滿의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第29條 (給與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① 給與는 그 支給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한 月의 翌月부터 始作하여 權利가 消滅한 月에 終了한다.

② 給與는 그 支給을 停止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月의 翌月부터 그 事由가 消滅한 月까지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 給與는 每年 3月·6月·9月 및 12月에 各各 그 前月分까지를 支給하되, 그 給與를 받을 權利가 消

減하였거나 그 支給이 停止된 경우에는 그 支給時期에 不拘하고 支給할 수 있다.

第30條(死亡의 推定) ① 事故가 發生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탔던 者로서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中의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탔던 者로서 行方이 不明하게된 者 其他의 事由로 生死가 不明하게 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給與가 支給된 後 그 者의 生存이 確認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는 받은 金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31條(未支給의 給與) ① 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있어서 死亡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給與로서 아직 그 者에게 支給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者의 配偶者, 子女, 父母, 孫子女, 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그 者의 死亡當時 그 者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었던 者는 自己의 名義로 그 未支給給與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 死亡한 受給權者가 死亡前에 그 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者는 自己의 名義로 그 給與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未支給의 給與를 받을 者의 順位는 第1項에 規定한 順序에 의한다.

④ 未支給의 給與를 받을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을 때에는 그 中 1人이 한 請求는 全員을 위하여 그 全額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中 1人에 대하여 한 支給은 全員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32條 (併給의 調整) 이 法에 의한 2이상의 給與의 受給權者에게는

그 者의 選択에 의하여 그 하나를 支給하고 다른 給與의 支給을 停止한다.

第33條(給與支給의 調整) ① (甲) 給與의 受給権者가 (乙) 給與의 受給権을 取得하므로 인하여 (甲) 給與의 受給権이 消滅되거나 또는 同一人에 대하여 (甲) 給與의 支給을 停止하고 (乙) 給與를 支給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甲) 給與의 受給権이 消滅되거나 (甲) 給與의 支給을 停止하여야 할 事由가 発生한 月의 翌月以後의 分으로서 (甲) 給與의

支給이 行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된 (甲) 給與는 (乙) 給與의 內拂로 본다.

㉣ 給與의 支給을 停止하여야할 事由가 発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停止되어야할 期間分으로서 給與가 支給되었을 때에는 그 支給된 給與는 그 後 支給하여야할 給與의 內拂로 본다. 給與를 減額 改定하여야 할 事由가 発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事由가 発生한 月의 翌月 以後의 分으로서 減額되지 아니한 額의 給與가 支給되었을 경우에 當該 給

與의 減額하여야 할 部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34條(不當利得의 徵收) 虛偽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給與를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은 支給額에 相當하는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35條(受給權의 保護) 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하거나 担保에 供하거나 또는 押留할 수 없다. 그러나, 老齡年金을 받을 權利에 대하여는 國稅滯納処分(그 例에 의한 処分을

包含한다)에 의하여 押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租稅 其他 公課金의 免除) 給與로서 支給된 金錢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自治団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其他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2節 老齡年金

第37條(老齡年金의 受給權者) ① 年金加入期間이 20年 이상이 된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로서 60歲(女子와 船員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5歲로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達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 또는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가지지 아니하고 60歲에 達하였을 때에는 老齡年金을 支給한다.

② 年金加入期間이 10年以上 20年未滿인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로서 60歲에 達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 또는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가지지 아니하고 60歲에 達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老齡年金額에서 一定한 金額을 減額한 年金(이하 "減額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

③ 年金加入期間이 20年以上인 60歲以上(女子 및 船員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5歲以上으로 한다)의 者와 年金加入期間이 10年以上 20年未滿인 65歲以上(女子 및 船員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60歲以上으로 한다)의 者

로서 加入者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在職者에게는 一定한 金額의 年金(이하 "在職者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

④ 年金加入期間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해당하는 文子로서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의 申請이 있으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老齡年金 또는 減額老齡年金에 갈음하여 一時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38條(老齡年金額) ①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齡年金의 額은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

②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額老齡年金의 額은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45에 該當하는 額으로 한다. 다만, 年金加入期間이 10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超過 每1年마다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5에 該當하는 額을 加算한다.

③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者 老齡年金의 額은 年金加入期間

이 20年 이상인 者의 경우에는 그 加入者의 年齡에 따라 다음 各號에 揭記한 額으로 하고, 年金加入期間이 10年以上 20年未滿인 者의 경우에는 第2項의 年金額에 該當하는 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年金加入期間이 20年以上인 女子 및 船員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있어서는 55歲에 대하여는 第1号, 56歲에 대하여는 第2号, 57歲에 대하여는 第3号, 58歲에 대하여는 第4号, 59歲에 대하여는 第5号, 60歲以上에

대하여는 第6号에 揭記한 比率을 適用한다.

1. 60歲인 者의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40에 該當하는 額.

2. 61歲인 者의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50에 該當하는 額.

3. 62歲인 者의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60에 該當하는 額.

4. 63歲인 者의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70에 該當하는 額.

5. 64歲인 者의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80에 該當하는 額.

6. 65歲以上인 者의 경우에는 第1項의 年金額의 100分의 100에 該當하는 額.

第39條(年金額의 最高限度) ①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齡年金의 月支給額은 加入者이었던 期間의 最終3年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에 相應하는 受給前年度의 標準報酬月額의 100分의 70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最終3年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에 相應하는 受給前年度의 標準報酬月額의 決定에 있어서는 第26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0條(加給年金額의 改定) ① 第27條第1項의 加給年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受給權者가 그 權利를 取得한 당시의 胎兒가 그 後 出生하였을 경우에는 受給權者가 그 權利를 取得한 當時 그 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 子女로 보아 그 出生한 月의 翌月부터 給與額을 改定한다.

②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 또는 子女가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 同條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加給年金額을 計算하지 아니하

며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게 된 月의 翌月부터 給與額을 改定한다.

1. 死亡한 때.

2. 受給權者에 의한 生計維持의 狀態가 끝난 때.

3. 配偶者가 離婚한 때.

4. 子女가 受給權者의 配偶者以外의 者에게 入養한 때.

5. 入養에 의한 子女가 罷養한 때,

6. 子女(受給權者가 그 權利를 取得한 當時로 부터 繼續 障害等級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는 者를 除外한다)가 18歲에

達한 때.

7. 障害等級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던 子女(18歲未滿의 子를 除外한다)가 그 障害狀態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

第41條(老齡年金의 消滅) 老齡年金의 受給權은 受給權者가 死亡하였을 때에 消滅한다.

第3節 障害年金

第42條(障害年金受給權者) ① 年金加入期間이 1年以上인 者로서 加入期間中에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한 때에는 그 傷病에 대하여 初診日로

부터 起算하여 2年을 경과한 날 (그 期間에 그 傷病이 治癒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治癒된 날)의 障害程度에 따라 障害年金을 支給한다.

② 第1項의 障害程度에 관한 障害等級은 1級, 2級, 3級으로 区分하되, 그 等級区分의 基準과 障害程度의 審査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 (障害年金額)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障害年金額은 障害等級에 따라 다음 各号에 揭記한 額으로 한다.

1. 1級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2. 2級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50에 該當하는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3. 3級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30에 該當하는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第44條(障害年金의 併給의 調整) 障害年金의 受給權者에게 다시 障害年金을 支給하여야 할 事由가 発生하였을 때에는 前後의 障害를 併合한 障害의 程度에 의한 障害年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從前의

障害年金의 受給權은 消滅한다.

第45條(障害年金額의 改定)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障害年金의 受給權者에 대하여 그 障害의 程度를 審査하여 그 程度가 從前의 障害等級과 다른 等級에 該當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程度에 따라 障害年金額을 改定한다.

② 障害年金의 受給權者는 그 障害의 程度가 悪化된 경우에는 保健社会部長官에게 障害年金額의 改定을 請求할 수 있다.

第46條(障害年金의 消滅) ① 障害年

金의 受給權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하는 外에 다음 各号의 1에 該當되는 境遇에 消滅한다.

1. 受給權者가 死亡한 때.
2. 이 法에 의한 障害等級의 障害狀態에 該當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障害年金에 相應하는 障害補償을 받았거나 그 權利를 取得한 때.

② 第1項 第3号의 경우에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받은 障害補償額이 이 法에 의한 障害年金額에

未達한 경우에는 上 差額을 支給한다.

第4節 遺族年金

第47條(遺族年金의 受給權者)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다음 各 号의 1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上 者의 遺族에게 遺族年金을 支給한다.

1. 年金加入期間이 20年以上인 者나 老齡年金受給權者 또는 減額老齡年金受給權者로서 死亡한 때.
2. 年金加入期間이 1年以上인 加入者로서 死亡한 때.
3. 年金加入期間이 1年以上인 者로

서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에 加入者이었던 期間에 発生한 疾病 또는 負傷 및 이에 起因한 疾病으로 因하여 初診日로부터 起算하여 2年을 経過하기 前에 死亡한 때.

4. 障害等級이 1級 또는 2級의 障害状態에 있는 障害年金의 受給権者로서 死亡한 때.

第48條(遺族의 範囲) ① 遺族年金을 받을 수 있는 遺族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當時 그 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있던

配偶者. 子女. 父母. 孫子女 또는 祖父母로 하되. 妻인 配偶者를 除外하고는 다음 要件에 該當하는 者이어야 한다.

1. 子女 또는 孫子女에 있어서는 18歲未滿이거나 또는 障害等級이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있는者.

2. 夫. 父母 또는 祖父母에 있어서는 60歲以上이거나 또는 障害等級이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는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父母는 配偶者 또는 子女가, 孫子女는 配偶

者. 子女 또는 父母가, 祖父母는 配偶者·子女·父母 또는 孫子女가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하였을 때에는 各各 遺族年金을 받을 수 있는 遺族으로 될 수 없다.

③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當時의 胎兒가 그 後 出生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將來에 向하여 그 子女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當時 그 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있던 子女로 본다

第49條(遺族年金額) ① 第47條의 規定

에 의한 遺族年金의 額은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50에 該當되는 額의 範圍內에서 第47條 各号의 要件內容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을 基本年金額에 乘하여 얻은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 다만, 老齡年金受給權者 또는 減額老齡年金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의 遺族年金額은 死亡한 者가 받던 老齡年金額 또는 減額老齡年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 配偶者가 아닌 遺族에 대한 遺族年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있어서 受給權者가 2人以上일 때에는 그 遺族年金을 等分하여 支給한다.

第50條(遺族年金의 加給年金額 計算)

① 配偶者에게 支給되는 遺族年金의 加給年金額은 配偶者가 그 權利를 取得한 當時 그 者와 生計를 같이 하고 또한 第48條 第1項第1号에 規定하는 要件에 該當된 子女에 대하여 計算한다.

② 妻가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한 當時의 胎児가 그 後 出生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子女는 妻가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한 當時 그 者와 生計를 같이 하고 또한 第48條 第

ノ項第ノ号에 規定한 要件에 該當된 子女로 보고 그 出生한 月의 翌月부터 給與額을 改定한다.

③ 第ノ項에 規定한 子女가 다음 各号의 ノ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加給年金額을 計算하지 아니한다.

ノ. 配偶者와 生計를 달리하게 된 때.

2.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喪失한 때.

④ 子女에 支給되는 遺族年金의 加給年金額은 受給權者인 子女중 ノ人을 除外한 子女에 대하여 計算한다.

第51條(遺族年金額의 改定) 配偶者外의 者에게 遺族年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있어서 受給權者의 數에 增減이 있을 때에는 그 增減이 있은 月의 翌月부터 遺族年金額을 改定한다.

第52條(遺族年金의 消滅) ① 遺族年金의 受給權은 受給權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消滅한다

1. 死亡한 때

2. 他人과 婚姻(事實上 婚姻關係를 包含한다)을 한 때

3. 他人의 養子(事實上 養子關係를 包含한다)로 된 때.

4. 罷養으로 因하여 死亡한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와의 親族關係가 消滅된 때.

② 子女 또는 孫子女가 가지는 遺族年金의 受給權은 다음 各号의 ㅣ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消滅한다.

ㅣ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에 達하였을 때. 그러나, 子女 또는 孫子女가 受給權을 取得한 때로부터 계속 障害等級이 ㅣ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障害等級이 ㅣ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는 子女 또는 孫子女가 그 障害狀態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未滿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夫·父母 또는 祖父母가 가지는 遺族年金의 受給權은 障害等級이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던 夫·父母 또는 祖父母가 그 障害狀態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消滅한다. 그러나, 夫·父母 또는 祖父母가 受給權을 取得한 當時 60歲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父母, 孫子女 또는 祖父母가 가지는 遺族年金의 受給權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當時의 胎兒가 그 後 出生하였을 때에는 消滅한다.

⑤ 遺族年金은 當該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에 대하여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遺族年金에 相應하는 遺族補償을 받았거나 그 權利를 取得한 때에는 消滅한다. 이 경우에 第4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3條(子女에 대한 遺族年金의 支

給停止) 子女에 대한 遺族年金은 配偶者가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가지는 期間 그 支給을 停止한다. 그러나, 配偶者에 대한 遺族年金이 그 支給을 停止당하고 있는 期間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4條(配偶者에 대한 遺族年金의 支給停止) ① 30歲未滿의 妻에 대한 遺族年金은 다음 各号의 ㅣ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50歲에 達할 때까지 그 支給을 停止한다.

ㅣ. 18歲 未滿의 子女 또는 障害等級 ㅣ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

에 있는 子女가 없거나 그들과 生計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遺族年金을 5年間 支給받았을 때.

2. 5年 이상 遺族年金을 支給받은 後 18歲 未滿의 子女 또는 障害等級 1級 또는 2級의 障害狀態에 있는 子女와 生計를 같이 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러나, 受給權者인 妻가 障害等級 1級 또는 2級에 該當되는 障害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配偶者에 대한 遺族年金은 그 配偶者의 所在가 1年 이상 不明한 때

에는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가지는 子女의 申請에 의하여 그 所在가 不明한 때로 遡及하여 그 支給을 停止한다.

③ 配偶者는 언제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의 停止의 解除를 申請할 수 있다.

第55條(配偶者外의 受給權者에 대한 支給停止) ① 配偶者外의 者에 대한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受給權者중 1人 이상의 者의 所在가 1年 이상 不明한 때에는 그 者에 대한 遺族年

金은 다른 受給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所在가 不明한 때로 遡及하여 그 支給을 停止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의 支給을 停止당한 者는 언제든지 그 支給의 停止의 解除를 申請할 수 있다.

③ 第5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族年金의 支給이 停止되거나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停止가 解除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條중 增減이 있은 月"을" 支給이 停止되거나 또는 그 停止가 解除된 月"로 한다.

第5節 返還一時金

第56條(返還一時金)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다음 各号의 ㅣ에 該當하게 된 경우에는 그 者(第2号의 경우에는 死亡한 者의 遺族)에게 返還一時金을 支給한다.

ㅣ. 年金加入期間이 10年 未滿인 者로서 60歲(女子 및 船員과 第37條第ㅣ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5歲로 한다 이하 이 号에서 같다)에 達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維持하지 못하거나

60歲에 達하기 前에 加入資格을 喪失한 後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60歲에 達한 경우

2. 第47條 各号의 要件에 該當되지 아니한 者가 死亡한 경우

③ 第1項 各号의 規定에 의한 返還一時金의 額은 加入期間中 本人이 負担한 寄與金 또는 醵出料의 總額에 大統領令으로 정한 率을 乘하여 얻은 額을 그 總額에 加算한 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年金加入期間이 5年이상 20年未滿의 者 (女子의 경우에는 2年이상 20年未滿의 者)

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加算金을 이에 거듭 加算한다.

② 年金加入期間이 10年未滿인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女子가 그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1年이 經過한 경우에는 그의 申請이 있으면 第1項第1号의 規定에 不拘하고 返還一時金을 支給할 수 있다. 이 경우 返還一時金의 額은 第2項의 計算方法에 의하되 特別加算金은 加算하지 아니한다.

第57條(返還一時金 支給의 效果)

返還一時金의 支給을 받았을 때에는 그 一時金의 計算의 基礎로 된 年金加入期間은 加入者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第58條(返還一時金 受給權의 消滅) 返還一時金의 受給權은 受給權者가 加入者로 되었을 때 또는 障害年金이나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한 때에는 消滅한다.

第6節 給與의 制限

第59條(期間算定의 制限) 醵出料를 徵收하는 權利가 時效에 의하여 消滅하였을 때에는 當該醵出料에 該

當하는 年金加入期間은 給與의 算定期間으로 하지 아니한다.

第60條(給與의 制限)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廢疾 또는 그 直接 原因이 된 事故를 故意로 発生시킨 때에는 當該 障害를 支給事由로 하는 障害年金은 支給하지 아니한다.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써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障害, 死亡 또는 그 原因이 된 事故를 発生하게 하였거나 그 障害의 程度를 悪化시

키거나 恢復을 妨害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61條(障害年金의 不改定) 障害年金의 受給權者가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써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障害의 程度를 惡化시키거나 恢復을 妨害하였을 때에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定을 하지 아니한다.

第62條(遺族年金의 支給制限)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者에게는 遺族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前에 그 者의 死亡으로 遺族年金의 受給權者로 될 수 있는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者에게는 遺族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다른 受給權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受給權은 消滅한다.

第63條(支給의 停止) 給與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될 경우에는 그 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支給을 停止할 수 있다.

1. 受給權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第

55
447

10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質問에 應하지 아니한 때.

2. 障害狀態로 因하여 給與의 受給權을 가지거나 또는 加給年金額의 計算의 基礎로 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診斷 또는 確認을 拒否한 때.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써 또는 正當한 事

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障害의 恢復을 妨害하였을 때.

4. 受給權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第10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書類其他의 物件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

第4章 福祉施設

第64條(福祉施設) 保健社會部長官은 加入者, 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必要한 施設과 事

業을 할 수 있다.

第5章 財 政

第65條(國庫負担) 國庫는 每年 國民福祉年金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担한다.

第66條(醵出料)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福祉年金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醵出料를 徵收한다.

② 醵出料는 年金加入期間의 計算의 基礎로 된 各月에 대하여 徵收한다.

③ 第1種 加入者의 醵出料額은 標準報酬月額의 1,000分의 70으로 하고, 第2種加入者의 醵出料額은 月

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障害의 恢復을 妨害하였을 때.

4. 受給權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第10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書類其他의 物件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

第4章 福祉施設

第64條(福祉施設) 保健社會部長官은 加入者, 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必要한 施設과 事

業을 할 수 있다.

第5章 財 政

第65條(國庫負担) 國庫는 每年 國民福祉年金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担한다.

第66條(醵出料)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福祉年金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醵出料를 徵收한다.

② 醵出料는 年金加入期間의 計算의 基礎로 된 各月에 대하여 徵收한다.

③ 第1種 加入者의 醵出料額은 標準報酬月額의 1,000分의 70으로 하고, 第2種加入者의 醵出料額은 月

900원이상으로 하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醵出料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要하는 費用의 豫想額과 豫定運用收入 및 國庫負担의 額을 比較하여 將來에 걸쳐 財政의 均衡을 維持할 수 있도록 적어도 5年마다 財政收支를 再計算하고 그 結果에 따라 調整한다.

第67條 (醵出料의 負担 및 納付義務)

① 第1種加入者를 使用하는 使用者가 負担할 負担金은 第1種加入者의 標準報酬月額總額의 1,000分의 40으로

하고, 第1種加入者의 寄與金은 標準報酬月額의 1,000分의 30으로 한다.

② 使用者는 그 使用하는 第1種加入者의 寄與金과 自己가 負担하는 負担金을 合한 醵出料를 納付하는 義務를 진다.

③ 任意継續加入者와 第2種加入者는 醵出料의 全額을 自己가 負担하고 醵出料를 納付하는 義務를 진다.

第68條 (醵出料의 納付期限) 每月의 醵出料는 翌月 10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第69條(醵出料의 先納) ① 醵出料는 이를 先納할 수 있다.

② 先納된 醵出料는 年金加入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先納된 분의 期間의 各月의 初日이 到達되었을 때에 그 月의 醵出料가 納付된 것으로 본다.

第70條(醵出料의 源泉控除)

① 使用者는 第1種加入者에게 通貨로 報酬를 支給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第1種加入者가 負担하여야 할 當月分의 寄與金을 報酬로 부

터 控除하여야 한다

②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與金을 控除하였을 때에는 寄與金의 控除計算書를 作成하여 第1種加入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71條 (第1種加入者의 醵出料의 納期前 徵收) 第1種加入者의 醵出料는 다음 各號에 揭記한 경우에 있어서는 納期前이라도 이를 徵收할 수 있다.

1. 納付義務者가 國稅·地方稅·

其他의 公課의 滯納으로 因한 滯納處分 또는 强制執行이나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

2. 納付義務者에 대하여 企業担保權의 執行節次의 開始 또는 競賣의 開始가 있을 때.

第72條(醵出料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種加入者에 관한 醵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定에 의하여 督促을 할 경우에는 督促狀을 発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納付期限은 적어도 10日 以上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內에 醱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73條 (延滯金)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醵出料의 納付를 태만히 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그 金額 100원에 대하여 1日 7전의 比率로 納付期間 滿了日의 翌日로부터 醵出料의 完納 또는 押留日의 前日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醵出料 其他 徵收金의 一部를 納付할

때에는 그 納付日의 翌日부터 그 納付한 醵出料의 額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延滯金을 徵收한다.

第 ㄱㅅ 條 (醵出料등의 徵收의 優先順位) 醵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의 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第6章 異議申請과 審査

第1節 異議申請

第75條(審査請求 및 再審査 請求)

① 加入者의 資格, 標準報酬月額 또는 給與에 관한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保健社会部長官 기타 處分行政機関의 長(이하 "處分行政機関"이라 한다)에게 審査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国民福祉年金審査委員会(이하 "審査委員会"라 한다)에 대하여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 審査請求를 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決定이 없는 때에는 그 審査請求는 棄却된 것으로 보고 審査請求人은 審査委員会에 대하여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로 본다.

第76條(審査委員会에 대한 審査請求) 醵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決定 및 그 徵收에 관한 處分이나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

에 不服이 있는 者는 審査委員会에 대하여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第77條(異議申請과 訴訟의 關係)

第75條第1項 또는 第76條에서 規定한 處分의 取消의 訴는 當該 處分에 대한 再審査請求 또는 審査請求에 대한 審査委員会의 裁決을 거친 後가 아니면 이를 提起할 수 없다.

第2節 審査

第78條(審査의 請求)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處分이 送達된 날 또는 處分이 있었던 것을 안날의 翌日부터 60日以內에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9條(補正 및 却下) ① 審査의 請求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經過되었거나 法令上의 具備要件에 違反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関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 審査의 請求가 法令上의 具備要件에 違反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第1項의 處分行政機關은 相當한 期間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處分行政機關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期間內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의 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80條(通知등) ① 處分行政機關은 審査請求를 受理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害關係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通知를 받은 者는 第1項의 處分行政機關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8條 (原處分의 執行의 停止 等)

①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의 執行을 停止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關은 原處分의 執行에 의하여 發生할 重大한 損害를 避하기 위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② 處分行政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停止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82條(審査上의 權限) ①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關은 審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査請求人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거나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利害關係人을 그 指定하는 場所에 出席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意見이나 報告를 要求하는 行

爲

2 審査請求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証據가 될 수 있는 文書나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 要求하는 行爲

3 鑑定人에게 鑑定을 하게 하는 行爲

4.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關係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其他 場所에 出入하여 使用者·從業員 또는 關係人에게 質問하거나 必要한 文書 其他 物件을 檢査하는 行爲

② 第1項第4号의 規定에 의한 檢査와 質問을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 審査請求人이 다음 各号의 1에 該當될 때에는 審査의 請求를 받은 処分行政機関은 그 請求를 決定으로써 棄却하거나 그 意見을 採択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項第1号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質問

에 答辯을 하지 아니하거나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答辯이나 報告를 한 때.

2. 第1項第2号의 規定에 의한 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

3.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第83條(節次의 承継) 審査請求人이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기 前에 死亡한 때에는 承継人은 審査請求의 節次를 承継할 수 있다.

第84條(審査請求의 取下) 審査請求人은 決定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審査請求를 文書로써 取下할 수 있다.

第85條(決定) 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關은 審査를 終結한 때에는 原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는 決定이나 審査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를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第86條(決定의 方式) ①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② 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關이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第87條(決定의 效力과 그 發生時期)

① 決定은 審査請求人에게 決定書의 正本이 送達된 때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② 決定은 原處分을 行한 行政機關의 長 및 其他의 利害關係人을 羈束한다.

第3節 再 審 査

第88條(審査委員會의 設置)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行하거나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第89條(構成) ① 審査委員会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9人以内로 構成한다

②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될 수 있다.

③ 委員의 任用資格 및 任用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0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 心身喪失者 또는 精神薄弱者.

第91條(審査委員会의 運営 등) 審

査委員会의 運営에 관한 事項과 委員에 대한 報酬·手當 其他 實費辨償 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2條(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에 있어서는 原處分을 行한 行政機関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93條(再審査請求期間 등)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第86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書의 正本이 送達된 날 또는 當該處分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翌日로 부터 起算하여 60日以内에 文書로 하여

야 한다.

第94條(通知 등) ①審査委員会는 再審査請求를 受理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上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적어도 審理期日 5日前까지 再審査請求人 및 原處分을 行한 行政機関의 長(以下 "當事者"라 한다)에게 各各 通知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上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95條(審査委員會의 權限)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를 위하여 必要하다

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査請求人의 申請에 의하거나 또는 職權으로 第82條第1項 各号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項第4号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는 그 指定하는 委員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8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하는 委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96條(審理의 公開) 審査委員会의 再審査의 審理는 公開한다. 그러나, 當事者의 双方 또는 一方의 申

請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7條(審理調書) ① 審査委員会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審査經過에 관한 審理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當事者 또는 利害関係人은 第1項의 審理調書의 閲覧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審査委員会는 當事者 또는 利害関係人으로부터 第2項의 閲覧申請이 있을 때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98條(裁決) 審査委員会는 審理를 終結할 때에는 原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는 裁決이나 再審査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를 棄却하는 裁決을 하여야 한다.

第99條(準用規定) ① 第79條·第82條第3項·第86條 및 第87條의 規定은 審査委員会의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審査"는 "再審査"로, "審査의 請求를 받은 處分行政機関"은 "審査委員会"로, "決定"은 "裁決"로, "決定書"는 "裁決書"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86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그 裁決書의 謄本을 原處分을 한 行政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7章 補 則

第100條(時效) ① 醵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또는 返還을 받을 權利 및 各種 給與를 받을 權利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② 給與를 받을 權利의 時效는 當該 給與의 全額에 대하여 支給이 停止되어 있는 동안 進行하지 아니한다.

③ 醵出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納入의 告知 또는 第7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은 民法 第17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時效

中斷의 效力을 갖는다.

第101條(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民法의 期間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02條(年金原簿) 保健社会部長官은 國民福祉年金原簿를 備置하고 加入者의 姓名·記号·番号·資格의 取得 및 喪失, 醵出料의 納付 및 給與의 支給狀況 其他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記録 維持하여

야 한다.

第103條(戶籍事項의 無料証明) 市·區·邑·面長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受給權者에 대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入者, 加入者이었던 者 또는 受給權者의 戶籍에 관하여 無料로 証明을 発給하여야 한다.

第104條(受給權者에 대한 調査)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受給權者에 대하여 工者의 身分関係, 障害狀態 其他 受給權의 消滅, 年金額의 改定 또는

支給의 停止에 관한 書類 其他의 物件을 提出하도록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들 事項에 관하여 受給權者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05條(診斷) 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障害의 狀態에 의하여 給與의 受給權을 갖거나 또는 加給年金額의 計算의 基礎로 되어 있는 者에 대하여 그

指定하는 医師의 診斷을 받도록 命하거나 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들의 障害의 狀態를 確認하게 할 수 있다.

第106條(申告등) ①使用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加入者는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使用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受給權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 또는 提出하여야 한다.

④加入者 또는 受給權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戶籍法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申告義務者는 10日 以內에 그 뜻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7條(使用者의 事務) 第1種加入者에 대한 年金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事務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使用者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 있다.

第108條(檢査등)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加入者의 資格, 標準報酬月額, 醵出料 또는 給與에 관한 決定에 관

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使用者 또는 加入者에 대하여 文書, 其他의 物件을 提出할 것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에 出入하여 關係人 또는 當該 加入者에게 質問하거나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04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9條(代位權등) ① 이 法에 의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支給事由가 第三者의 行爲로 인하여 發生한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當該 支給事由에 대하여 이미 行한 給與額의 範圍안에서 受給權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갖은 損害賠償請求權을 取得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三者로부터 同一한 事由로 인하여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그 賠償額의 範圍안에서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10條(徵收業務의 委託)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醵出料의 徵收業務와 이에 關聯된 이 法上의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

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国税庁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11條(外国人에 대한 適用)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所에 使用되고 있는 外国人은 그 申請에 따라 第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種 加入者로 될 수 있다.

第112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章 罰則

第113條(罰則) 虛偽 其他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은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万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4條(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當되는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10万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偽의 申告를 한 者.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通知를 하지 아니한 使用者.

3.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3回以上 받고도 그 指定한 期限까지 醵出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

4. 第82條第1項第4號·第95條第1項 또는 第10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質問에 答辯을 拒否하거나 虛偽의 答辯을 하거나 關係公務員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11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735-11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上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1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上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上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에 處한다.

第116條(過怠料) 第106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者는 3万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7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除外) 이 法 施行當時 55歲(女子 및 船員과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0歲로 한다) 이상의 者는 第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加入者가 될 수 없다.

第3條(老齡年金의 特例) ① 이 法 施行當時 40歲이상 55歲未滿(女子 및 船員과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35歲이상 50歲未滿으로 한다) 의 者에 대하여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老齡年金을 받을 수 있는 年金加入期間을 다음 各号와 같이 한다. 다만, 女子 및 船員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그 出生年度를 다음 各号에 揭記한 年度에 5年을 加한 年度로 한다.

1. 1920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60月.

2. 1921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68月.

3. 1922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76月.

4. 1923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84月.

5. 1924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92月.

6. 1925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00月.

7. 1926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08月.

8. 1927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

는 116月.

9. 1928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24月.

10. 1929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32月.

11. 1930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40月.

12. 1931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48月.

13. 1932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56月.

14. 1933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64月.

15. 1934年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172月.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加入期間을 滿了한 者에 대하여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者에게 다음 各号에 掲記한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老齡年金을 支給한다.

1. 60月 이상 68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45에 該當하는 額.

2. 68月 이상 76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48 에 該當하는 額.

3. 76 月 이상 84 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 分의 52 에 該當하는 額.

4. 84 月 이상 92 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 分의 56 에 該當하는 額.

5. 92 月 이상 100 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 分의 60 에 該當하는 額.

6. 100 月 이상 108 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 分의 64 에 該當하는 額.

7. 108月 이상 116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68에 該當하는 額.

8. 116月 이상 124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72에 該當하는 額.

9. 124月 이상 132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76에 該當하는 額.

10. 132月 이상 140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80에 該當하는 額.

11. 140月 이상 148月 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84에 該當하는 額.

12. 148月이상 156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88에 該當하는 額.

13. 156月이상 164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92에 該當하는 額.

14. 164月이상 172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96에 該當하는 額.

15. 172月이상 240月未滿의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00分의

100 에 該當하는 額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同項의 年金加入期間을 滿了한 後 加入者의 資格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者에게는 在職者老齡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年金加入期間이 10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백